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 2008.2.14(목) 배포시부터	

생 산 일	2008.2.14	생산부서	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최영록(2150-9110)	담 당 자	배정훈(2150-9111)

제목: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

◇ '08 1.16(수) 입법예고한 **2008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** 2. 14(목) 차관회의에서 심의되었음

○ 앞으로 2.19(화) **국무회의를 거쳐** 공포·시행될 예정임

○ 동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**입법예고 및 부처협의** 과정에서 **제기된 의견이 반영**되어 2008.1.15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

※ 첨부 :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재정경제부 대변인

〈첨부〉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

1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(소득령 §208의5⑤)

개 정 안	수 정 안
□ **개인사업자**(복식부기의무자)가 **인건비를 지급**하는 경우 반드시 **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**하도록 하되, **다음에 해당하는 자**에게 지급시 **예외 인정** **(소득세법§160의5, 07.12.31 공포)** ① **연체자** ② **외국인 불법체류자** **<추 가>** *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(0.5%) 부과	③ **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*** ('09.12.31 까지 적용) * **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** *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**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**인 근로자 등

〈수정이유〉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**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**

〈적용시기〉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

2 세무사·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(조특영§104의5)

현 행	개 정 안
□ **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**	
○ 납세자 직접 신고시 : 연 4만원 - 소득세 또는 법인세 : 2만원 - 부가세(연 2회신고) : 각 1만원	○ 현행유지
○ 세무사, 세무법인·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	○ **공제액 확대**
- 납세자 1명당: 연 **1만원** - 공제한도 · 세무사 : **연 100만원** · 세무·회계법인 : **연 300만원**	- 납세자 1명당: 연 **2만원** - 공제한도 · 세무사 : **연 200만원** · 세무·회계법인 : **연 500만원**

<수정이유>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**국세행정비용이 절감**되므로 전자신고에 대하여 추가지원

○ 개인이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는 4만원까지 전자세액공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**개인이 받는 전자세액공제액의 50%수준**에서 공제액 결정

○ **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액이 인상***된 반면, 전자신고 공제액은 '03년말 도입후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

* 지급명세서의 경우 대리 전자제출시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, 공제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 (금년 시행령 개정)

<적용시기> '08.1.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3 통합발행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 추가(소득령 §22의2)

현 행	개 정 안
□ 다음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**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는 이자로 과세하지 아니함** ○ 국채 ○ 산업금융채권 ○ 예금보호기금채권 및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<추 가>	○ **통화안정증권 추가**

<수정이유>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을 지원

* 통합발행 : 발행시점이 다른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을 단일한 종목의 채권으로 취급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4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 시행 유보(주세영§21의2)

개 정 안	수 정 안
□ 주세가 경감(50%)되는 전통주의 범위 ○ 모든 전통주(농민주 + 민속주)로 확대	<삭 제>

<수정이유> 08.7.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중 **업계실태, 외국사례 조사** 등을 **거쳐 추진**

5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 유예(관세령 §65⑤)

개 정 안	수 정 안
□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○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부과	<삭 제>

<수정이유> 최근 DDA 협상과정에서 동 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, 명문화 유예

*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의 권고사항으로 EU,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부지침에 의거 '96년부터 운영중임

<적용시기> 추후 협상동향 확인 후 도입여부 결정